



사단법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본 학회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정관 제4조(사업), 제13조(임원의 선임), 제32조(위원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1.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모든 선거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거제도의 검토 및 개선
3. 기타 본 학회의 임원 선출에 연유하여 발생하는 관련 문제
4.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운영위원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회 정관 제32조에 따라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운영위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의결 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선거 일정)

1. 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매년 2월 28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운영위원회는 선거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학회 간행물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회장 후보자격)

1. 후보자는 회장 선거일 기준 최근 연속 5년 이상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후보자는 대의원회 구성분야 중, 당해년도 회장과 다른 분야이어야 한다.
단, 당해년도 회장이 회원 구성 2/3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에서 선출된 경우, 후보자는 1회에 한하여 동일분야에서 연속 추천 될 수 있다.
3.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부회장, 사무총장/운영위원장, 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거나 현재 역임 중인 회원
 - 2)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 3)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4. 후보자는 당해년도 회장과 동일한 단과대학 또는 학부/학과 출신의 회원에서 추천될 수 없다.

제7조 (회장 후보 결정)

1. 위원회는 제5조에 의거 적격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이들에 대하여 회장후보자선정위원회가 2명을 선정한다.
2. 확정된 후보자는 입후보 소견서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투표)

1. 투표와 관련된 제반실무는 위원회 감독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투표권자는 투표 개시일 시점에서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는 정관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3. 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웹상의 전자투표 방법을 투표권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4. 투표기간은 투표안내 발송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5. 투표는 선거마감일 당일 24시 까지를 유효로 인정한다.
6. 개표는 투표완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9조 (개표 및 당선자 확정)

1.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2. 개표 시에는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석할 수 있다.
3.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 표결로 결정한다.

제10조 (회장후보자선정위원회)

회장후보자선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1. 회장
 2. 전임회장단에서 추천한 정회원인 전임회장 3인 이내
 3. 대의원 6인
 - 1) 대의원회 분야 별로 분야 내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선출한 분야별 최대 득표자 2인으로 구성함.
 - 2)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하여 선출함.
 - 3) 선출된 대의원이 위원직을 고사하였을 경우에는 차점자로 선출함.
-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간사가 된다(간사는 의결권이 없음).

제11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2조 (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 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10월 12일 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2년 5월 24일 개정함.
3. 본 규정은 2003년 2월 12일 개정함.
4. 본 규정은 2003년 8월 26일 개정함.
5. 본 규정은 2006년 5월 11일 개정함.
6. 본 규정은(제1조, 제3조, 제4조)은 2008년 9월 24일 개정함.
7. 본 규정(제8조 2항, 제10조)은 2010년 9월 6일 개정함.
8. 본 규정(제6조 3항)은 2013년 4월 12일 개정함.
9. 본 개정규정(제3조, 1, 3, 4항)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규정(제6조, 3항)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규정(제6조, 3항)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규정(제6조, 2, 4항)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